##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허위진단서작성·허 위작성진단서행사·배임증재·배임수재


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4. 2. 7. 2013고합269]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이명신(기소), 이명신, 구승모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태평양 외 4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 1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에 대한 허위진단서작성, 허위작성진단서행사, 배임증재,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횡령), 공소외 25 영농조합법인으로 인한 공소외 24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(배임) 및 피고인 2에 대한 2008. 10. 14.자 허위진단서작성,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,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[이유]

1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